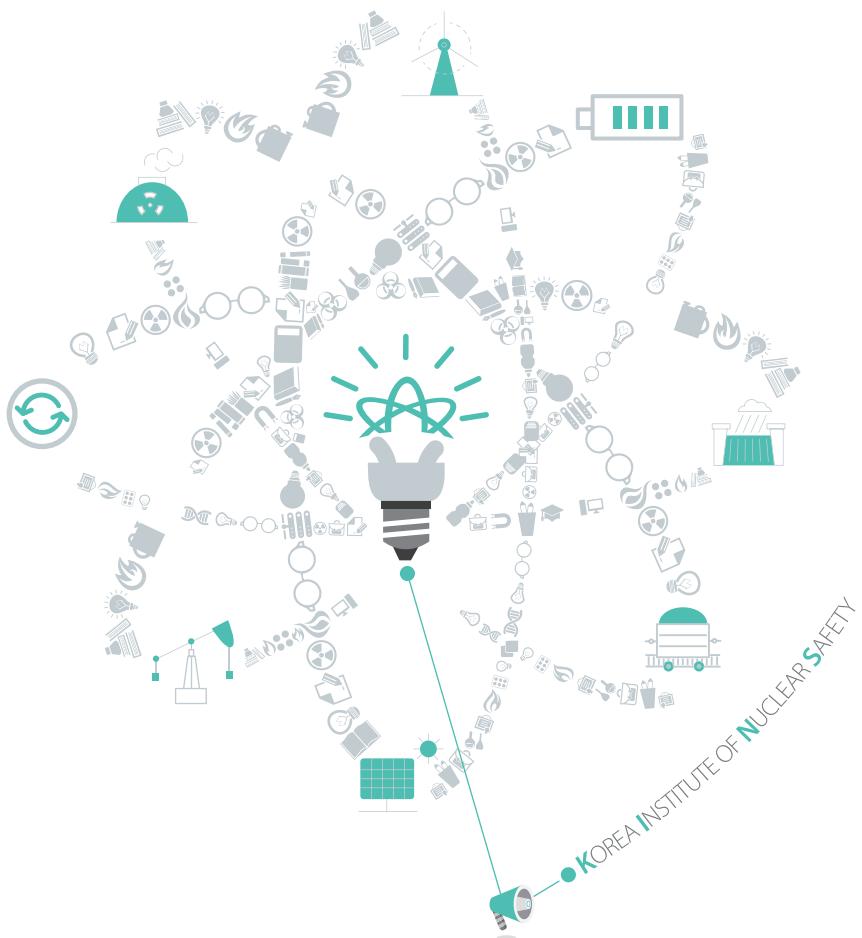


방사선발생장치 …신규 사용신고 서류 작성 매뉴얼

2019. 11





- ▣ 이 안내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서류 작성 방법, 서류의 제출 시기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 이 안내는 3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및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필요한 서류의 종류,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를 작성하는 예시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파트는 두 번째 파트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내용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 ▣ 이 안내서를 통하여 방사선발생장치를 처음 사용하는 기관에서 관련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 이 안내서의 2019년 12월 현재 유효한 원자력안전법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으로서 법령개정 또는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 절차도 변경되게 되어 이 안내서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 이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신 사용자께서는 『방사선애로기술지원 컨택센터』 (080-004-3355)에 의견을 주시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30일



방사선발생장치
신규 사용신고 서류 작성 매뉴얼

목 차

1.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신고 주의 사항	1
2.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신고 제출 서류 목록	2
3.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신고 서류 수집 방법	3
4.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신고서류 작성 예시	4
5.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상세 내용	12



1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신고 주의 사항

일 러 두기	<p>① 이 안내 내용은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예시의 표준을 설명한 것이다.</p> <p>② 신청인은 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작성서류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시한 양식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p> <p>③ 제시한 양식에 맞추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도,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u>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요청이 발생될 수 있다.</u></p> <p>④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에 대한 안전성 검토(심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발급은 국가 행정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행한다.</p> <p>⑤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안전성 검토(심사)는 부담금이 납부된 이후에 안전성 검토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배정되어 안전성 검토가 착수되게 된다.</p> <p>⑥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에 대한 안전성 검토(심사)는 안전성을 검토하는 심사 전문가에게 문서가 배정된 후 통상적으로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p> <p>⑦ 만일, 서류에 대한 보완이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소요 시간보다 업무처리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p>
주 의 사항	<p>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는 사전신고이다. 따라서,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기 전에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는 소재지별로 하여야 하며, 소재지의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행정구역의 주소지에 속해있는 건물, 부속건물 및 부지 경계를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 또한, 신고한 기관의 공장 건물이 방대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소라 할 수 있으며, 인접한 건물과 건물사이에 물리적 경계가 있지만 단일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소로 간주할 수 있다.</p> <p>③ 사업소가 이전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변경신고를 신규 사용신고로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용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의 사용신고 내용에 대하여 미리 알아봐야 한다.</p> <p>④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하게 되면, 방사선발생장치를 소지한 사람과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한 사람 모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p> <p>⑤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계승인을 득하여 검사를 필하거나/면제된 장비(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의료기기품목허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입하여야 한다.</p>

2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이동사용)신고 제출 서류 목록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
2. 대표자 정보
 - 원자력안전법 제14조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3.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4.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
5.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6.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사업소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안)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기준



3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이동사용)신고 관련 서류 수집 방법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방법 1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절차→③민원서식 순으로 검색하여 입수

방법 2

국가법령법령정보센터(<http://low.go.kr>)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

2.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대표자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방법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절차→③민원서식 중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서 입수

3.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방법

구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에 요구하여 사본 입수

4. 사용시설등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방법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민원→②민원절차→③민원서식 중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파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서 입수

5.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사업소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방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수, 사업자등록증은 종된 과세대상 사업장이 모두 표기되어 있는 전체를 입수

6. 보상기준

방법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s://rasis.kins.re.kr>)에서 ①포털→②알림마당→③자료실

4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이동사용)신고서류 작성 예시

- 사용신고 관련 서류 작성방법을 예시한 것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 안내를 참조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법인명(단체명) 기술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의 <u>사업자등록번호 기술</u>		
	주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 주소 (우편 번호 : 11111)	전화번호 본사 담당자 전화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만드 시 작성		
	사업소명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장소가 있는 상호의 지점, 공장 또는 분소명 (oo지점, oo공장, oo분소, oo지사, oo사업소, oo연구소, oo센터 등, 부서명칭은 아님)			
	사업장소 위 사업소명의 위치한 소재지 주소 (우편번호 : 22222)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부서	담당자 담당자 성명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하는 업체의 명칭(구입, 양수 등 구입 방법 표기)	전화번호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 하는 업체의 전화번호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을 신고합니다.

2018년 6월 21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및 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신고인은 반드시 대표자명으로 작성하고 대표자 직인 혹은 기관직인을 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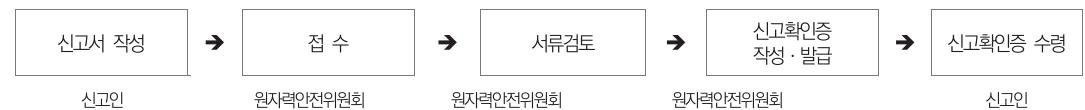
신고인 제출서류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선발생장치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사용시설 등 및 주변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1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3.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 및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관리기술 사가 재직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나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의 업무대행자가 있는 경 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대표자 성명/직인 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2 대표자 정보

대표자 인적사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 관련)

내국인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홍대표 ○ 주민등록번호 : 190301-1010101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9번지
내국인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방대표 ○ 주민등록번호 : 190301-2010101 ○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9번지
외국인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미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9번지
외국인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 여권번호 : ○ 국내거소지 주소 :
외국국적 한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미국한국대표 ○ 외국인등록번호 : 190301-5050505 ○ 국내거소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9번지

- 외국인 대표자 : 3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 추가 제출

- ①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② 외국 국적 한국인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③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 : 여권사본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1) 아포스티유 또는
 - (2)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외국인 대표자인 경우 제출 서류〉

구분	국내거주 외국인	외국국적 한국인	국내 비거주 외국인
제출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사본 + •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 대표자 : 인적사항 제출 불필요
-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표자로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첨부 1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방사선기기의 종류와 튜브 타입을 기술 예) 캐비닛형 엑스선발생장치, 싱글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된 방사선기기의 성능을 기술 ○ 병행하여 도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를 기술 예) 160 kV, 0.5 mA × 2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에 표기되어 있는 방사선기기의 모델을 기술 예) X-RAY 3000D
④ 고유번호	○ 고유번호가 확인된 경우에만 기술 ○ 고유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미정”으로 기술
⑤ 설계승인번호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승인번호를 기술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하는 업체의 명칭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제작사를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국을 병행하여 기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⑦ 공급사 (전화번호)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관 명칭을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기관 명칭을 기술 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판매기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양도기관)
⑧ 사용목적	○ 신청기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실제 목적을 기술 예)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제품내 이물질 검사, 용접결합검사 등
⑨ 사용방법	○ 방사선발생장치를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간단히 기술 ○ 가동시 통상적인 운전조건(전압, 전류)을 기술
⑩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칭 층수, 설치공간 기술 예) 생산동 1층 정밀측정실
⑪ 표면방사선량률	○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키탈로그 또는 설계승인 시 평가한 선량 등 통상적인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 ※특별히, 사용시간이 긴 작업 등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연간 선량을 계산하여 기술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 비밀번호로 동작하는 장비는 그 특성을 기술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기술

[주의사항]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위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서류 보완이 수반되어 처리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 ② 위 명세서는 시행규칙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항목을 기술한 것으로서 신고서 서식처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 ③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성능, 모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종류, 성능, 모델별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위 서식으로 구별하여 표현이 가능하다면, 하나의 서식에 내용을 모두 기술하여도 된다.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별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 ②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수 있음
 -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와 구조기준, 성능, 수량, 설계승인번호 등이 구별되게 작성하여야 함



4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

첨부 1의 별첨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제시한 모델 및 설계승인번호별로 각각 스캔하여 첨부)

-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제시한 방사선발생장치 모델 및 설계승인번호별로 첨부 한다.
- ◎ 설계승인 도입 이전의 장비는 설계승인서가 없어도 된다.
※ 설계승인서가 없을 경우, 카탈로그를 제출한다.(설계승인 제출시, 카탈로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5

사용시설등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

첨부 2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 관련)

1. 사업소(사용시설) 주변 환경

가. 지리 환경

- 1) 사용시설 주변 부지의 특성(농경지, 공단, 주거지 등 조성 여부)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용시설 인근에 설치된 대중 이용시설(학교, 시장 등)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시설 등의 위치정보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사용시설 인근에 조성된 수계(강, 하천 등)에 대한 설명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 환경

- 1) 사업소 주변의 개략적인 인구밀도 및 주민 분포, 유동 인구 유동 특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소 주변의 교통망 및 소방 도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관할 소방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관할 경찰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연락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별첨 1)

[별첨 1]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2. 사용(보관)장소 주변 특성

가. 사용(보관)장소 및 작업환경의 특성

- 1)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표기된 사용장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 2) 사용장소 주변에서 피폭이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의 접근 가능성 및 피폭될수 있는 인원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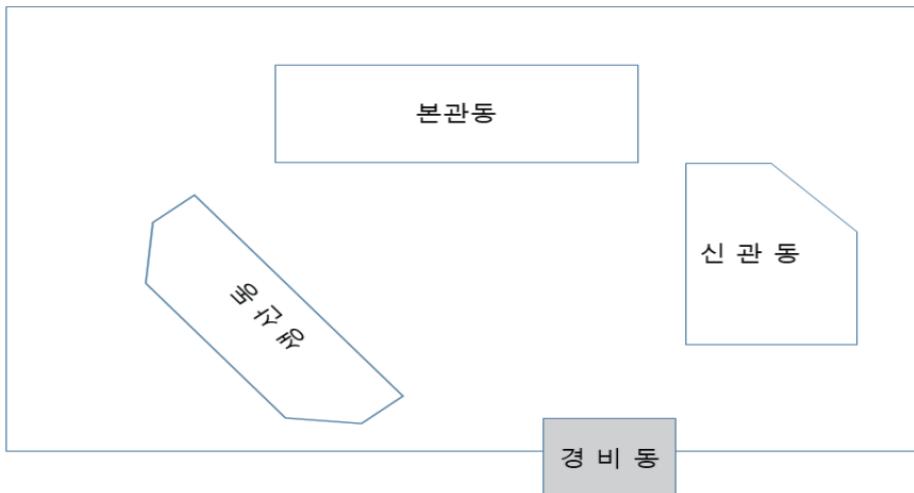
나. 사용(보관)장소의 특성

- 1) 화재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콘크리트, 불연성 자재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2) 침수 우려 : 사용시설의 설치높이, 배수로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3) 지반붕괴의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 등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안관리 : 사용(보관)시설에 CCTV, 시건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 설치
 - 여기부터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용(보관)장소의 평면도 (별첨 2, 별첨 3)

[별첨 2] 사업소 내 건물 배치도

000공장 건물 배치도



[별첨 3] 사용장소 평면도 (사용장소 명칭, 방사선원의 모델명, 성능, 수량을 함께 기재합니다.)



3. 키디 톤리니화

(필수화 경우) 반드시 인증 허가증이나 고지부여증이 있어 시장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6**사업자등록증 사본****첨부 3****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서의 상호명, 대표자명, 본점소재지, 사업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첨부한다.
-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다.

첨부 3의 별첨**사업소를 신고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에 신고서의 사업장소(사업소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소재지가 신청인의 소유 또는 관리대상에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추가 제출
예) 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건물 또는 토지 등기관련 서류, 건축허가서, 용도변경승인서 등 관련 지자체의 승인서 등
- ※ 제출하고자 하는 입증자료에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금액 등)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 또는 가림처리하여 제출



7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명**(이하 “당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당사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당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애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당사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당사 임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직인 또는 관인)

5

방사선발생장치 신규사용(이동사용) 신고 서류 작성 방법 상세

1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 ① 방사선발생장치(이동사용)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 ② 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항목으로서 신청인이 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하면 안된다.
 - ③ 만일, 신고서 항목을 변경하거나, 작성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에는 서류 적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안으로서 서류에 대한 보완이 발생되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작성예시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보기

■ 표지면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사용(이동사용)신고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을 신고합니다.



상세방법

신고서 항목별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번호는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부여한 것이다

① 상호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의 사업주체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 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신고인란 중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명(단체명)이 되어야 하며,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법인명(단체명)과 동일한 명칭을 상호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주소

-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의 사업주체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 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어 있는 본점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기재한다.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소재지와 사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 주소란에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 소재지 주소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이 발생할 수 있다.

④ 전화번호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본사에서 방사선발생장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사람)의 전화번호 또는 대표번호를 기재한다.

⑤ 대표자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및 제4항, 원자력안전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자(사업주체)로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대표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의 신고인이 된다. 신고업무처리가 완료되면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 이 발급되게 되는데, 이때 대표자 성명이 신고확인증에 등재되게 된다.
- 대표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대표자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를 한다.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단독대표인 경우, 대표자를 대표자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 모두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표자 모두를 대표자란 에 기재하여야 한다.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 또는 각자대표 모두를 대표자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인이 선택하여 대표자를 기재하면 된다.
case 4)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란에 대표자의 직함을 기재한다.

⑥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란에 기재한 대표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아래 경우에 따라 기재한다.
case 1)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란에 기재된 공동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한다.
case 2)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란에 기재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한다.
case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case 4) 국내거주 외국인, 국내거주 재외동포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두 기재한다.
case 5)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 주의사항 :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는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외국인 대표인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항목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⑦ 사업소명

- 사업소명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장소가 존재하는 사업소의 법인명(단체명)이 되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신고가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사업소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상호명을 사업소 명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임대사업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명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한다.
- 통상적으로 사업소명은 oo지점, oo공장, oo분소, oo지사, oo사업소, oo연구소, oo센터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소명이 가능하지만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사용시설의 명칭이나 조직의 단위 부서의 명칭이 사업소명이 될 수는 없다.
- 사업소명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기재한다.
 - case 1)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사업소명은 상호명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case 2)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업장소재지에서 사용하지만, 상호가 본사 상호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호명과 동일하게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 case 3) 사업자등록증에 본점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구분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있는 상호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는 상호를 기재한다.
 - case 3)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신고하는 기관의 규모에 따라 사업소가 지리적(소재지 주소 등)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신고하는 기관의 관리체계상 분리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 기관에서 명칭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⑧ 사업장소

- 사업장소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용장소가 존재하는 사업소의 법인명(단체명)이 위치한 소재지 주소가 되며,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2항,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신고가 적합하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시설, 저장시설, 보관시설의 위치가 화재, 침수, 지반붕괴의 우려가 없는 사업소인지를 확인하며, 해당 사업소를 신고인이 관할하여 방사선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이행할 수 있는 영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소지로 작성은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사업장소의 주소는 사업소명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본점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주소가 되거나, 과세대상 사업자과세단위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에 등재되어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만, 임대사업장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소명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입주계약서 등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등재되어 있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다.

⑨ 전화번호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사용신고를 신청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기록하며, 기본적으로 유선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출장 등으로 유선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폰 번호를 병행하여 기재한다.

⑩ 담당부서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사용신고를 신청한 담당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명칭을 기재한다.

⑪ 담당자

- 정부나 KINS에서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관련 조치사항, 방사선 안전정보, 관련 제도의 변경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 사용신고를 신청한 업무 담당자를 성명을 기재한다.

⑫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원자력안전법 제9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여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유통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따라서, 신고인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는 기관의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생산허가 또는 판매허가를 받은 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허가기관 또는 신고기관에서 양도 받는 경우에는 양도받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한다.
- * 실제로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사용허가기관이나 사용신고기관에서 양수하여 사용할 예정인데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기관이나 생산허가기관의 명칭을 기재하여 승인을 받고, 후에 당초 계획대로 사용허가기관이나 사용신고 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양수한 후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을 때 양도하는 기관이 해당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 또는 신고범위에 없다고 한다면, 양도·양수 신고가 처리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법 제94조에 위배될 수 있다.
- 만일,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에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지 않고, 서류 대행 및 운반만 담당하는 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라면, 서류를 대행하는 기관의 명칭과 방사선발생장치의 판매허가를 받아 실제로 설치/시운전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판매기관 : 가나다 물산(납품서류 및 운반 업무만 수행)
 - 허가기관 : 방사선판매 주식회사(설치 및 시운전 업무 수행)

⑬ 전화번호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60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 또는 양도기관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⑭ 신고인

- 신고인은 대표자가 신고인이 되는 것임으로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 또는 관인을 날인한다.

2

대표자 인적사항

- 원자력안전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자 결격사유를 확인하여 사업주체로서 적합한 대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작성항목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를 기재한다. 주민등록번호는 13자리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지(본적지)주소는 지번 주소까지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표자 인적사항은 사용신고서에 등재된 대표자 모두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 성명 : 홍대표

주민등록번호 : 190301-1010101

등록기준지(본적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19번지

- 외국인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내 체류 특성에 따라 다음의 3가지 자료를 제출한다.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② 외국 국적의 한국인인 경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③ 국내거주 외국인이 아니어서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자국내에서 범죄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여권 사본

- 아포스티유 또는

- 해당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자국내에서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표자를 임명하는 공공기관은 임명당시 이미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대표자로서 대표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를 작성할 때에는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 사본을 요구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식별표시에 부착되어 있는 설계승인번호와 동일한 설계승인번호가 등재되어 있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를 입수한다.

- ②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항목을 누락시키지 않고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예시

설계승인서를 보고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를 작성하는 항목 보기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첨부 1)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 관련)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에 종류를 그대로 기재하고, 상세내역의 티브 타입을 기술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상세내역에 표기된 성능을 기술하고 수량은 X 대수로 표기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상세내역에 모델란에 있는 모델명을 그대로 기술
④ 고유번호	방사선발생장치의 시리얼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술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원수와는 관련으로 남겨둠
⑤ 설계승인번호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번호는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를 기술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제작사의 명칭을 기술하고, 제조국과도 병기
⑦ 공급사 (전화번호)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점명 및 전화번호 영수받는 경우 양도인점명 및 전화번호
⑧ 사용목적	신고기관에서 사용하는 목적을 기술
⑨ 사용방법	사용시 인가되는 최대 전압과 전류를 기술하고,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기술
⑩ 사용장소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 층수, 호실, 형태로 기술하고 신고한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장소의 명칭을 기재함
⑪ 표면방사선량률	구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흡연용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비밀번호로 통제시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술한다. 설계승인서에 표기된 기관과 반드시 차이가 서로 다른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당한 경로로 획득하였는지 확인 사항을 기술한다.

발급번호 : 190217841581 [발지 제76호 서식] 제 344-24 호	(일자)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상 호 : ()	생년월일 :												
주 소 :	대 표 자 :												
방사선기기의 종류 :	모델명 :												
종류 : 콤 퓨터보노트 맥스선발생장치	모델 : 삼성 내역 벌룬												
제조사 :	성 놈 :												
제조사 : 자비스(주)	제작국 :												
주 소 : 신고대상장비	제작국 : 대한민국												
승인번호 : NSSC1.111R004.24	사용국적 : 대한민국												
승인 조건 : 상세내역 벌룬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승인 일자 : 2004. 10. 06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 결과 : 합격	[1 / 2]												
문서번호 : 344-24 호	설계승인 번호 : NSSC1.111R004.24												
설계승인서 상세내역													
()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모델 및 성능</td> </tr> <tr> <td>모델명</td> <td>제작국</td> <td>제조일자</td> <td>비고</td> </tr> <tr> <td>Foton-009</td> <td>00 KW, 1.25 MHz</td> <td>설명</td> <td></td> </tr> </table>		■ 모델 및 성능				모델명	제작국	제조일자	비고	Foton-009	00 KW, 1.25 MHz	설명	
■ 모델 및 성능													
모델명	제작국	제조일자	비고										
Foton-009	00 KW, 1.25 MHz	설명											

작성방법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는 첨부의 표준양식을 제공하고 항목별 작성항목을 설명한 것이다.

- 도입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60조 및 제61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로서 안전성이 입증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항목이다.
-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용도	XRF, XRD, 가속이온주입기, 수화물검색기 휴대용 폭발물 처리 또는 휴대용 테러 방지 검사용(방호기준고시 제10조의3)
용량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사선발생장치 ①자체차폐, ②170 kV 이하, ③표면방사선량률 10μSv/h이하

- * 특히,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도는 설계승인서에 있는 표준 용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
- * 예로서, 설계승인서는 휴대용 테러방지 검사로 설계승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비파괴검사 또는 제품의 결함검사에 사용된다면, 용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용량 규정을 적용받아 ①자체차폐, ②170 kV 이하, ③표면방사선량률 $10\mu\text{Sv}/\text{h}$ 이하를 만족하여야 신고대상 장비로 분류되게 된다.
- 따라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1호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최대에너지, 표면방사선량률, 사용목적, 사용방법,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칭, 모델번호, 고유번호, 제조사의 명칭이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도입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가 여러 대인 경우,
 - ①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별로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 ②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수 있다.
 - 하나의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모두 작성할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와 구조기준, 튜브타입, 성능, 설계승인번호 등이 구별되게 작성하여야 함
-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조(방사선발생장치)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규제적용 대상 방사선발생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또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구조기준이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에 있는 첫 번째 항목에 표기된 내용을 기재한다.
 - 또한,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 제15조의 구조기준 「완전방호형」, 「캐비닛형」, 「무인격리형」, 「휴대개방형」을 기재한다.
 - 아울러, 튜브가 여러개 장착된 방사선발생장치가 존재하므로 튜브타입을 병행하여 기재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캐비닛형 엑스선발생장치, 듀얼타입 또는 휴대개방형 엑스선발생장치, 싱글 또는 무인격리형 엑스선발생장치, 듀얼타입 또는 캐비닛형 가속이온주입기, 싱글 등
---------------	--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 및 수량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된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확인증”에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 대수 성능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성능에 표기되어 있는 성능을 기술하고,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대수를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 및 수량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②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수량	160 kV, 0.5 mA × 2, 100 kV, 0.2 mA × 1
------------------	--

③ 모델번호

- 도입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로서의 적합하게 설계승인이 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 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은 해당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당 모델이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번호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모델란에 표기되어 있는 모델을 기술한다.
※설계승인서에 모델이 시리즈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모델번호는 시리즈로 작성하면 안되고,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 모델명을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모델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③ 방사선발생장치 모델번호	X-RAY 3000D, X-RAY 3000AD
----------------	---------------------------

④ 고유번호

- 방사선발생장치 고유번호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시리얼 번호를 기재한다.
- ※최초에 방사선발생장치를 도입하는 기관으로서 시리얼 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고유번호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④ 고유번호	공란 또는 X-3000D-20190001 등
--------	--------------------------

⑤ 설계승인번호

- 설계승인번호는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로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설계승인번호는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 최신본의 승인번호를 기술한다.
※설계승인번호는 도입되는 방사선발생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설계승인번호와 동일한 설계승인번호를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번호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⑤ 설계승인번호	NSSC1.321RG001.05 등
----------	---------------------

⑥ 제조회사의 명칭

- 제조회사의 명칭은 도입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계승인된 방사선발생장치와 동일한 성능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제조회사의 명칭은 방사선기기설계승인서의 방사선기기의 종류항목의 세부항목중 제작사의 명칭을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제조회사의 명칭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⑥ 제조회사의 명칭 (제조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
------------------	-----------------

⑦ 공급사

-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제53조, 원자력안전법 제94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3조, 방사선 안전 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적합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원자력안전법 제9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소지 및 양도·양수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를 검토하여 미승인 취급자가 방사선발생장치를 유통시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신고서의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예정)처”란에 있는 구입처와 동일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기관의 판매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기술한다.
- 다른 기관에서 방사선발생장치를 양도받는 경우, 해당기관의 신고확인증(또는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호를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공급사를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⑦ 공급사 (전화번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판매기관) 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현장주재검사팀(양도기관) 가나다 물산(운반 및 납품), 방사선발생장치 판매 주식회사(설치 및 시운전)

⑧ 사용목적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적합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사용신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 특히,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도는 설계승인서에 있는 표준 용도나 목적과 무관하게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될 수 없다.
 - * 예로서, 설계승인서는 휴대용 테러방지 검사로 설계승인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비파괴검사 또는 제품의 결함검사에 사용된다면, 용도 규정에 적용되지 않고 용량 규정을 적용받아 ①자체차폐, ②170 KV 이하, ③표면방사선량률 $10\mu\text{Sv}/\text{h}$ 이하를 만족하여야 신고대상 장비로 분류되게 된다.
-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설계승인서에 표준사용목적이 제시되어 있지만, 신청기관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실제 목적을 기술한다.
 - 예) 설계승인서의 사용목적이 “제품결함검사”인 경우라도 사용목적을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제품내 이물질 검사”, “용접결함검사”등이 될 수 있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⑧ 사용목적	회로기판 불량검출 및 결함검사 또는 제품내 이물질 검사 또는 용접 결함 검사 등

⑨ 사용방법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적합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사용방법은 방사선발생장치를 시작, 운전, 종료 방법을 간단한 절차를 기술하고, 통상적으로 인가되는 최대 전압과 전류를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⑨ 사용방법	키스위치와 비밀번호로 방사선발생장치를 가동하여 사용 가동전압 160 KV 0.1 mA를 인가하여 일일 5시간 사용



⑩ 사용장소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목적은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항목이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장소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건물명칭, 층수, 설치공간(명칭, 호실)을 기술한다.
 사용장소는 신청하는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명칭을 기술하여야 향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 ※캐비닛형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제품 생산공정명 또는 생산라인으로 표기하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는 공간을 사용장소로 기술하는 것이 향후 관리에 용이성이 있다.
- 예) 연구동 2층 포장실, 공장동 1층 생산실 등
- 휴대용 방사선발생장치로서 이동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소는 사업소 내 또는 사업소 내외로 기술하고 보관장소를 방사선발생장치가 보관되는 건물명칭, 층수, 보관공간을 표기한다.
- 예) 사업소 내 (보관장소 : 사무동 기기보관실 캐비닛 내), 사업소 외 (보관장소 : A동 1층 장비보관실 금고내), 사업소 내/외 (보관장소 : 품질보증실 캐비닛내)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⑩ 사용장소	사업소 내 (보관장소 : 사무동 기기보관실 캐비닛 내),
	사업소 외 (보관장소 : A동 1층 장비보관실 금고내)
	연구동 2층 정밀측정실, 사업소 내/외 (보관장소 : 품질보증실 캐비닛내)

⑪ 표면방사선량률

- 도입하여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라 신고대상 장비로서 안전성이 입증이 된 방사선발생장치인지를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표면방사선량률의 기술은 사용하고자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카탈로그 또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시 평가한 선량 등 통상적인 표면방사선량률을 기술하며, 긴 사용시간등 작업자의 피폭선량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이사항의 경우 연간피폭선량을 계산하여 자세히 기술한다.
-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방법을 기술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⑪ 표면방사선량률	표면 10 cm에서 1 $\mu\text{Sv}/\text{h}$
------------------	--------------------------------------

⑫ 기타 사항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을 기술한다.
- 휴대용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비밀번호로 동작시키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기술한다.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방사선발생장치를 정당한 경로로 획득하였는지 확인 사항을 기술한다.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

⑫ 기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
	◦ 비밀번호로 동작하는 장비는 그 특성을 기술
	◦ 설계승인을 받은 기관과 판매사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이유와 경위를 기술

4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 현황에 관한 설명서

- ①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에 관한 설명서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항목을 누락시키지 않고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첨부된 샘플 서식의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작성한다.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고,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적합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으로 인한 방사선장해 예방 및 환경 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이다.
- 시설 주변의 환경
 - 지리 환경 : 사업소 주변의 주요한 지형지물, 사업소와 인접한 학교, 시장, 백화점 등 대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설명한다.
 - 사회 환경 : 사업소와 인접한 교통망 및 시설, 소방도로, 사업소를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위치 및 사용시설로부터의 거리, 인접한 지역에 폭발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 등의 위치를 기술한다.
- 사용(보관) 장소
 - 사용(보관)장소의 명칭 및 설치위치
 - 방사선발생장치 명세서에 표기된 사용장소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장소의 명칭을 기재한다.
 - 사용(보관)장소의 화재, 침수 및 지반붕괴의 우려 : 방사선 규칙 제32조
 - 사용(보관)시설이 설치되는 건물의 화재 위험성, 침수 위험성 및 지반붕괴 위험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각각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 1) 화재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콘크리트, 불연성 자재 등) 및 소방시설 설치 등
 - 2) 침수 우려 : 사용시설의 설치높이, 배수로 등
 - 3) 지반붕괴의 우려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재질, 등
 - 사용(보관)장소의 보안 : 방사선규칙 제34조
 - 사용(보관)시설에 승인되지 않은 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CCTV, 시건장치, 출입통제시스템 등의 보안설비 설치여부에 대하여 설명한다.
- 첨부 지도, 도면 등
 - 사용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 (별첨 1)
 - 사업소내 건물 배지도 (별첨 2)
 - 사용(보관)장소의 평면도 (별첨 3)
 - 사용장소 평면도 (사용장소 명칭, 방사선원의 모델명, 성능, 수량을 함께 기재한다.)
- 기타 특기사항
(필요한 경우) 방사선안전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5

방사선작업종사자 보상기준(안)

작성방법

해당 기관에 적합한 샘플에 제1조 기관명칭 및 제2조 적용기준을 수정하여 제출한다.

<일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명**(이하 “당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사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당사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당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보상에 관하여 당사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당사 임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직인 또는 관인)

〈군사〉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명**(이하 “당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국군조직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 부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당 부대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군인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당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애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당 부대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당사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당 부대 임직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직인 또는 관인)



〈학교〉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명**(이하 “당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교직원, 계약직(축탁), 조교, 대학원생 (학부학생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 부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교직원, 조교는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르며, 계약직(축탁), 대학원생, 학부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본교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본교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교 종업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직인 또는 관인)

〈공무원〉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청기관명**(이하 “당사”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및 협력관계에 있는 타 소속의 자로써 본 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당 부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공무원연금법** 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5조(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①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보상금액은 피해를 입은 당시 목적물의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목적물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을 말한다.

제6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7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8조(건강진단)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애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9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 당사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본교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본교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보고) 본교 종업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청기관명 대표자 성명 (직인 또는 관인)